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가단1199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9. 8. 5.자 상속재산분할 합의는 3,848,41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848,41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판사 김철환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1층 9.60㎡ 계단실, 2층 내지 4층 각 149.40㎡, 5층 125.73㎡, 옥탑 9.60㎡ 계단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양천구 대 250.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6.58㎡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50.1분의 26.448 끝.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위 C은 원고에게 위 양수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자'이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위 C의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약의의 '수익자'입니다.

2. 이 사건의 발생 경위

가. 양수금채권(피보전채권)의 존재

소외 주식회사 D은 2012. 9. 3. 소외 C에게 24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자율 연 5%, 지연배상금을 '대출금리 + 연체일수 89일 이하 시 연체가산금리 연 9%, 대출금리 + 연체일수 90일 이상 시 연체가산금리 연 10%'로 하여 대여해 주었습니다(갑 제1호증 개인신용대출 거래약정서 참조).

그런데 위 C은 위 차용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4. 6. 20. 위 은행의 C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갑 제2호증의 1, 2 각 채권매매계약, 채권양도통지서 참조).

이후, 원고는 위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 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75765호), 원고승소판결이 2015. 6. 30. 선고되어 2015. 7. 21. 확정되었습니다(갑 제3호증 판결문 참조).

따라서 위 양수금 채권과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3,848,418원 및 그 중 1,314,645 원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갑 제4호증 채권계산서 참조).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위 C의 아버지는 소외 E이었는데, 위 E은 2019. 8. 5. 사망하였고, 위 C은 위 E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상속할 수 있었음에도 (위 E의 상속인들 및 C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가족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시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넘겨버려, 2020. 3. 31. 피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위 부동산 중 채무자인 위 C의 상속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위 C의 재산인데, C은 분할협의를 통해 위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여 그 무자력의 상태를 더 심화시켰는 바, 위 분할협의를 명백히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은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바(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는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1) 따라서 C 및 피고 사이의 위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는 전술하였던 증거신청을 통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반환되어야 하는 C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향후 청구취지를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2) 그런데 위 부동산은 사해행위 이전인 2018. 6. 25. '채권최고액 296,00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사해행위 이후인 2020. 4. 22. 말소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따라서 본 사건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 2022. 4. 13.까지의 원리금 3,848,418원을 한도로 이 사건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리금 합계액인 3,848,418원에 대한 '가액반환'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